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6-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안테나 (제2015-028호)	나○○ (마포구 성미산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 3년 ('26. 7.30.)